

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 도입과 시사점

류건식 선임연구위원

요익

- 영국은 2012년부터 사용자는 일정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를 자동 가입시키도록 의무화하고, 자동 가입의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제도인 네스트(NEST: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)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우리나라도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과 같은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.
- 영국은 근로자의 은퇴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수년간 모색한 끝에 2008년 퇴직연금법을 전격 개정하여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을 신설함.
 - 2008년 퇴직연금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사용자는 일정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근 로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함.
 - 근로자가 제도 탈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동 가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, 이 러한 자동가입은 근로자의 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.
-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자동가입할 것으로 예상됨.
 -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, 중소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가입하며 이 경우 근로자 급여의 최소 3% 이상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함.
 - 자동가입규정 대상자는 공적연금수령(남자 65세, 여자 60세)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, 연소득이 5,035 파운드 이상 33,540 파운드 이하인 근로자임¹).

¹⁾ 자동가입의 의무대상이 아닌 다음 조건의 근로자-16세 이상 22세 미만이면서 5,035파운드 이상의 연 소득자, 공적연금 수령연령 이상 75세 미만이면서 5,035 파운드 이상 소득자-들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

- 총 기여금은 8%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총 기여금 중 의무적으로 3% 이상을 기여하도록 규정(사용자의 최소기여금제도 신설)함.
- 또한 자동가입의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하나로 네스트(NEST: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)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함.
 - 사용자는 2012년부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와 NEST제도에 근로자를 자동 가입시킬 수 있음.

〈표 1〉자동가입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특징

| 구분 | 주요 내용 및 특징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 | 근로자 12만 명 이상의 기업은 2012년 제도 시행과 함께 바로 자동가입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미만의 기업은 3년에 걸쳐 도입 2012년에 창업되는 기업은 2016년까지 도입 | | |
| 기여금의 단계적 인상 | - 총기여금은 2012년에 2%, 2016년에 5%, 2017년에 8%로 상향 조정 - 사용자의 의무기여금은 2012년에 1%, 2016년에 2%, 2017년에 3%로 단계적 인상 | | |

- NEST 제도는 중·저소득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이며, 운용주체는 공적기관인 국민 고용저축신탁공사(NEST Corporation)임.
 - 개인퇴직계좌인 PA(Personal Account) 시행을 위해 설립된 Personal Accounts Delivery Authority는 종료되고 국민고용저축신탁공사인 NEST Corporation이 설립됨.
 - 동 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저소득층과 소기업의 니즈에 맞도록 설계되었지만 법적으로 모든 기업도 가입이 가능하며,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업도 추가로 도입할 수 있음.
 - 또한 특정 근로자(예: 신규입사자, 계절노동자 등)만을 대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는 NEST제도에 자발적 가입이 가능함.

사용자는 자동가입규정(최저기여금납입)을 따르도록 제도화. 그러나 16세 이상 75세 미만이면서 연소득이 5,035 파운드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자동가입규정(최저기여금납입)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.

- NEST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가 변동하며, 기여율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3%, 근로자는 4%, 정부는 1%를 기여하게 되고, 기여금의 연간 상한은 3,600 파운드임.
 - NEST Corporation이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므로 근로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수탁 자책임이 존재함.
 - NEST Corporation은 회장과 14명의 수탁자 회원(Trustee Member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탁자 회원은 노동부장관에 의해 지정하도록 규정됨.

〈표 2〉 사용자, 근로자, 정부의 기여율

| 기간 | 사용자 최저 기여율 | 근로자 퇴직기여율 | 정부의 세제혜택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2012. 10~2016. 9 | 1.0% | 0.8% | 0.2% |
| 2016. 10~2017. 9 | 2.0% | 2.4% | 0.6% |
| 2017.10월부터 | 3.0% | 4.0% | 1.0% |

- NEST제도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며 사업장 규모 및 산업과 관계없이 모두 가입 할 수 있고, 기여금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기여금을 설정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님.
 - NEST제도의 설립 비용은 기여금의 2%, 연간 운영수수료는 적립금의 0.3%에 불과하여 수수료 가 매우 저렴한 수준임.
 - 또한 온라인 서비스로 인해 제도 운영이 간편하고 가입자 이직시 사용자가 NEST계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다른 퇴직연금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유연성(통산기능)이 높은 편임.
- ♣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의 역할 감소와 사적연금의 기능 제고 차원에서 영국과 같은 퇴직연금 자동가입 규정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.
 - 즉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이 별도의 의사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. kiri